

주요국의 공정거래제도 운영

본 협회 조사부

미 국

FTC, 국제전자상거래 시장에 있어 소비자 보호에 관한 보고서 발표

연방거래위원회의 소비자보호국은 9월 6일 「국제 전자상거래시장에 있어서 소비자보호 : 앞으로의 전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동 보고서는 소비자가 해외의 웹사이트(web sites)에서 구매할 경우 어느 국가의 법률 및 법원이 관할할 것인가를 포함하여 정부, 산업계 및 소비자단체로부터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또한 동 보고서는 일부에서 제안하고 있는 것처럼 온라인상의 판매자가 오직 자국의 법률 및 법원에서만 관할토록 한 것과 또는 각각의 매매계약에서 기재된 법률에 의해서만 관할토록 한 것에 대하여 경고하였다. 동 보고서는 법의 부분적인 수렴, 시장경쟁, 대체적인 분쟁해결수단(ADR), 민간부분의 주도권 및 국가간의 상호협력도 안전

한 국제 전자상거래시장에서는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동 보고서는 국제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효율적인 소비자보호를 확보하기 위하여 몇가지 제안을 하고 있다.

관할권 및 준거법에 대한 효과적인 틀을 만든다. 현재의 시스템은 통상 소비자가 자국 중심의 보호에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이 방법은 예측가능성 및 온라인상의 판매자의 준수 의무에 대한 염려를 초래하고 있다. 지금 해야 할 임무는 판매자가 속해 있는 국가 및 법원에만 또는 판매계약 규정대로 판매자들을 종속시키는 시스템을 채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고 이러한 염려에 대처하는 것이다. 이렇게 현재의 방법을 변화시키는 것은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소비자보호와 최종적으로는 소비자의 신뢰를 손상시킬 위험이 있다.

대체적인 분쟁해결수단(ADR)의 발전을 더 한층 권장한다. ADR은 소비자보호 및 소비자구제의 실용적인 방법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산업계 및 소비자를 위한 국제소송의 위험성을 감소시킨다.

FTC 및 상무성은 2000년 6월 온라인상의 소비자거래를 위해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비용으로 분쟁해결의 진전을 촉진하는 방법에 대

해 워크샵을 개최하였다.

소비자보호법의 부분적인 수렴을 추진한다. 핵심이 되는 공통의 소비자보호가 인식되고 부분적인 법의 수렴이 추진되어야 한다.

소비자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고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부분의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추진한다. 증명서프로그램, 평가시스템, 행동규범 및 날인증서보험프로그램 등과 같이 민간부분이 주도권을 쥐고 소비자의 염려에 대처하는 것은 전자상거래의 지속적인 성장에 중요하다.

국가간의 사적 및 공적소송 판결의 인식 및 집행에 대한 조정을 더욱 추진한다. 소비자 및 소비자보호당국에 의한 외국기업에 대한 판결은 국경을 초월하여 유효하게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의 목적은 판결의 인식 및 집행에 관한 국제적인 협정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

세계 속의 소비자보호당국은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기 위해 유효한 대응책을 추진한다. 효율적인 소비자보호법의 국제적인 집행은 광범위하고 체계화된 정보의 공유 및 국가간의 협력행위에 의존한다.

또한 동 보고서는 이 문제에 관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이드라인 뿐만 아니라 1999년 6월에 행

한 FTC 워크샵에서의 중요한 성과를 요약하고 있다.

Orson Swindle 위원이 기권한 위원회의 표결에 의해 동 보고서는 4 대0으로 가결되었다.

■ 2000. 9. 6, FTC 발표

FTC, Covisint B2B 벤처에 대한 HSR에 의한 대기기간 종료

연방거래위원회는 9월 11일 B2B 거래를 행하는 Covisint의 설립자에 대해 Covisint의 설립이 클레이튼법 (Clayton Act) 제7조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 HSR (Hart-Scott-Rodino Antitrust Improvements Act)에 의한 대기기간 (Waiting Period)을 종료하였다고 통지하였다.

이 사업의 관계자에게 통지함에 있어 위원회는 Covisint가 초기단계에 있으며 내규, 운영규칙, 참가자의 진입 (access) 조건이 아직 채택·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그리고 이의 설립자가 자동차시장에서 매우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위원회는 Covisint 벤처의 설립이 경쟁상의 염려를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위원회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수도 있다 하여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유보하였다.

Covisint는 위원회에 의해 심사된

최초의 B2B사업이다. 이 사업은 자동차산업의 공급망에 있는 회사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에 의한 B2B 거래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합작투자 회사 (joint venture)이다. 벤처가 핵심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것은 자동차 제조업자와 이들에 대한 직·간접적 공급자에 의해 행해진 자는 제품설계, 공급망의 운영, 조달업무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

Covisint를 구성하는 회사는 5개의 자동차제조업자 - General Motors Corp., Ford Motor Co., Daimler Chrysler AG, Renault SA, 그리고 Nissan Motor Co. Ltd 와 2개의 정보기술회사인 Commerce One, Inc. 그리고 Oracle Corporation이다. 벤처 설립에 참가하는 자동차제조업자는 전세계 자동차제조업자의 약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제안된 Covisint 거래관계자는 2000년 6월에 HSR법상의 신고를 끝마쳤으며 위원회로부터의 추가정보 요구에 대한 답변을 지난 8월말에 완료하였다.

FTC Robert Pitofsky 위원장은 "6월의 FTC 워크샵에서 배운 바에 의하면 B2B 전자시장은 이로 인해 현저한 비용절감을 이룰 수 있고, 거래과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조직화되며 경쟁이 향상된다고 하는 커다란 장래성을 제공하는 것이다. B2B는 생산성 증대와 가격인하를 통해 사업자와 소비자 쌍방에게 이익이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물론 전통적 또는 새로운 경제 어느 쪽에서든 어떤 합작투

자회사 (joint venture) 관련 사례에서와 같이 B2B도 경쟁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직되고 운영될 수 있다. 개개 B2B의 독점금지법상의 분석은 이의 역할, 구조, 특별한 시장환경, 조직 및 운영 절차와 규칙, 실제 운영과 시장성과에 따라 행해진다"라고 언급하였다.

심사를 종료하는 위원회 표결은 4 대0이었으며 Thomas B. Leary 위원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 2000. 9. 11, FTC 발표

미국 제약회사들, FTC의 조사에 직면

연방거래위원회는 10월 11일, 대형 제약회사들이 저비용의 유사약품 제조업체들로부터의 경쟁을 억압함으로써 위법하게 가격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였는지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였다. FTC의 이번 조사는 유명약품 제조업체들이 유사약품 제조업체들과 공모하여 저렴한 약품의 출시 시기를 늦추기로 하였는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 조사는 금년 봄 Abbott Laboratories 사와 Aventis 사가 유사약품 제조업체들에게 이들이 경쟁제품을 출시하지 않는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FTC 소송에 뒤이은 것이다. FTC는 또한 Bristol-Myers-Squibb 사가 자사의 항암제인 Taxol의 유사약품 제조업체들에

대하여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Geneva Pharmaceuticals 사에 대하여 자사의 고혈압 치료제인 Hytrin의 유사약품을 출시하지 않는 대가로 매월 450만 달러(300만 파운드)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Abbott 사는 당해 계약이 합법적이라고 하였으나 장래에 이와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합의함으로써 사건을 종결지었다.

Aventis 사는 Andrx Pharmaceuticals 사에 심장약인 Cardizem-CD의 유사약품을 출시하지 않는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였다고 비난받고 있다. 이 사건은 연말 전에 법원에 제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 법에 따르면 새로운 약품의 개발업체들은 자신들의 약품을 고정된 기간 동안 배타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해주는 특허를 취득할 수 있으나, 그 특허가 만료되면 동일한 성분의 유사약품이 판매될 수 있다. 경쟁 약품의 도입은 일반적으로 약품의 가격을 급격히 떨어뜨린다.

FTC 위원장인 Robert Pitofsky 에 따르면 전부 합쳐 미국 내 매출액이 200억 달러에 달하는 유명상표 약품들은 앞으로 5년 내에 특허가 만료될 것이다. 그 결과 제약회사들은 자사의 특허를 연장하기 위한 노력을 점점 공격적으로 펼쳐 왔었다. 종종 이들은 기존 약품에 약간의 변화만을 준 후에 새로운 특허를 신청하였다.

■ 2000. 10. 13, Financial Times

캐나다

캐나다 산업성경쟁국, 국제적 공모에 대해 경쟁법에 의거 271만 달러의 벌금 부과

캐나다 산업성경쟁국은 9월 19일 일본기업과 동 기업의 임원이 17년에 걸쳐 가격에 영향을 미친 국제적 가격 카르텔 및 시장을 분할하는 공모를 해왔다 하여 유죄가 선고되었다고 발표하였다. 공모는 소르빈산과 소르빈산 칼륨(합하여 Sorbate로 알려져 있다)에 관해 행해졌다. Sorbate는 주로 치즈와 기타의 낙농제품, 빵 제품 및 기타 가공식품 같이 수분과 당분을 다량 포함한 식품의 곰팡이 억제제로 사용되는 화학방부제이다.

다이셀화학공업(주)는 연방법원 사실심리부에서 유죄를 인정하는 답변을 함으로써 246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이 벌금에 추가하여 법원은 동 사에 대해 캐나다에서 동일한 범죄를 범하거나 또는 되풀이하는 것을 금지하는 금지명령을 행하였다. 다이셀의 유기화학제품담당 전 집행임원도 온타리오주 형사관할법원에서 유죄의 답변을 행하였고, 1979년부터 1996년까지 행한 공모에서의 그들의 역할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었다. 법원은 공모에 있어서의 이들 임원의 중요한 지위 및 개인적 역할을 고려하여 25

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우리는 캐나다의 경쟁에 피해를 주는 이러한 국제카르텔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이런 종류의 행위를 계속하여 근절해 나갈 것이다. 본 건에서 개인에 대한 유죄판결은 모든 경영자에게 강한 경고를 보내는 것이다. 결국 캐나다에서 이런 종류의 카르텔에 참가한 개인은 기소되는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라고 경쟁국 Hary Chaantra 차관보는 말했다.

위반행위 실행기간동안 캐나다에서 의 Sorbate 매출은 다이셀의 매출액 약 800만 달러를 합하여 약 3700만 달러였다.

다이셀은 Sorbate 업계에서 유죄를 받은 세번째 회사이다. 동 업계에 대한 조사는 진행중이다. 1998년 10월 26일 독일의 Hoechst AG가 가격카르텔과 수량할당으로 유죄가 되었으며 미국의 Eastman Chemical Company가 또한 똑같은 공모로 가격카르텔로 유죄가 되었다.

연방법원 사실심리부 및 토론토의 온타리오주 형사관할법원에 제출된 문서의 복사본은 경쟁국의 웹사이트에서 입수할 수 있다. 제출된 문서의 인증등본은 재판기록으로부터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2000. 9. 19, 캐나다 산업성경쟁국 발표

특 일

**독일 연방카르텔청,
처음으로 매입가 이하
의 판매에 대해 금지**

독일 연방카르텔청은 9월 7일의 결정에서 Walmart, Aldi-Nord, Lidl에 대해 기초식품분야(우유, 버터, 설탕, 소맥분, 쌀식물성 지방 등)의 특정상품을 각각 구매가격 이하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제6차 경쟁제한금지법 개정에 의해 도입된 제20조제4항제2문에서는 개별적인 사정으로 정당화된 경우를 제외하고 우월한 시장력을 가진 사업자가 일시적이지 않은, 즉 장기적으로 구매가격 이하로 판매하는 경우를 부당한 방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연방카르텔청이 인정한 내용에 따르면 상기 3사는 셀프서비스에 의한 기초식품판매점의 규모, 시장점유율 및 자원(자금)에 비추어 중소기업의 경쟁자에 대해 우월한 시장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2000년 6월말 이후 5개 내지 10개 품목에 대해 구매가격을 하회하여 판매하였다.

구매가격의 결정기준은 납입업자의 확인을 얻은 제조업자의 출고가격에 문제상품 전부에 참입할 수 있는 할인, 보수 및 기타 가격에 관한 조건을 고려한 것이다. 구매가격 이하의 판매는 처음부터 장기간에 걸쳐 실시코자

계획된 것으로서 2개월 이상 계속된 경우에는 일시적이지 않은 것으로 인정한다.

문제가 된 제품의 구매가격 이하의 판매는 앞으로도 정당화되지 않는다. 상기 금지조치는 선도가 떨어지는 상품에 대한 염매와 경쟁가격으로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Walmart는 6월 중순의 가격인하에 앞서 합법적으로 경쟁업자의 가격을 하회할 뿐 아니라 위법하게 구매가격을 하회하여 판매한 것이다.

Aldi-Nord는 월마트로부터 위법한 가격으로 도전을 받자, 경쟁가격(월마트와 유사한)으로 참가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 가격을 하회하였다. 더욱이 월마트가 활동적이지 않고 대응하는 경쟁가격이 존재하지 않은 지역에서도 Aldi-Nord는 구매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판매하였다. 그러므로 Aldi-Nord에 의한 가격대응은 지역적인 정당성의 유무를 근거로 말하여도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Lidl은 Aldi의 가격수준으로 참입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Aldi-Nord가 활동하였던 지역뿐만 아니라 Aldi-Nord가 활동적이지 않았던 남독일 지방에까지 참입하고 있었던 까닭으로 정당성이 고려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연방카르텔청은 알디 즈도(남), 덴클만/푸르츠 및 놀마에 대해 심사질차를 행했다. 이러한 기업이 구매가격을 하회하여 판매한 것에 대해서는 합법적이라고 인정했다. 왜냐하면 이들은 정도에 있어서나 지역적인 유효범위에서 단지 사전에 주어졌

던 경쟁가격에 대응하여 참가한 것뿐이기 때문이다. 연방카르텔청의 Boge장관은 매입가 이하로 경쟁업자가 참입하기 위하여 경쟁가격 이하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정당성을 부여하지만, 금지결정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 문제된 행위에 참가한 것을 중시한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불공정한 경쟁에 의해 가격의 대폭인하 판매는 저지될 것이다.

당국의 심사 후 Boge장관은 구매가격 이하의 판매로 인한 소비자의 이익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며, 생활물자 분야에 있어서 부정합 방해에 의한 경쟁의 저해는 영속적이고 현저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일시적으로는 경쟁업자의 배제 후에는 다시 집중이 진행되며, 중장기적으로는 살아남은 기업에 의한 가격인상의 여지는 한정된 상품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기타 상품 일반에도 확대된다는 것이다.

소비자에 대한 이익이 제한적이라는 말에 대하여 Boge장관은 연방청의 통계에 의하면 2인 가족의 연금수급자의 월간 수입인 약 2,800DM에서 문제상품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1%에 지나지 않으며 평균적인 4인 가족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에도 못 미친다는 것이다.

Boge장관은 "나는 소비자의 이익이 되는 경쟁을 현재뿐만이 아니라 장래에 대해서까지도 기능적으로 유지하는 연방카르텔청에서의 나의 임무를 완수해낸 것이다. 이를 위한 전제 조건은 독일에 있어서는 단지 시장력에 의해 지배되지 않는다는 것뿐만 아

나라 우리가 내일도 경쟁적 구조를 유지하는 데 있다. 이것은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울타리는 아니다. 내 생각에는 자립한 기업은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고 있는 한 시장력을 가진 대기업의 불공정한 가격정책에 의해 배제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라고 언급했다.

■ 2000. 9. 8. 독일 연방카르텔청 발표

E U

EU, 벨기에 맥주 카르텔에 대하여 경고

유럽위원회는 9월 2일, 맥주업체들인 인터브루사와 Alken Maes 사, 그리고 다농 그룹에 대하여 가격고정, 시장공유 및 벨기에 시장에 관한 정보 교환을 포함한 경쟁법 위반 주장과 관련하여 공식적인 법적 경고를 발하였다고 밝혔다.

인터브루사와 Alken Maes 사는 벨기에 시장에서 주도적인 맥주업체들이며, 다농 그룹은 경쟁법 위반이 발생하였다는 1993년부터 1998년까지의 시기에 Alken Maes 사를 소유하고 있었다.

유럽위원회는 룩셈부르크에 있는 다수의 소규모 맥주업체들에게는 이의성명서를 발송하였다고 하였는데, 이 업체들 중에는 Bofferding 사,

Diekirch 사, Mousel et Clausen 사, Battin 사 및 De Wiltz 사가 포함되어 있다.

동 위원회는 이들 업체가 룩셈부르크 식당, 호텔 및 카페에서의 판매와 관련하여 자신들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외국 맥주업체의 진입을 제한하자는 합의를 1985년부터 적어도 1998년까지 준수하였다고 하는 증거를 입수하였다고 밝혔다.

벨기에 맥주업체인 Haacht and Martens 사도 슈퍼마켓에서 판매되는 소규모 브랜드 맥주에 대한 권리침해 주장과 관련하여 또한 경고를 받았다. 모든 관련 당사자들은 이제 자신들의 입장 변호에 관한 내용을 서면으로 구두심리시에 제출하도록 권유받게 될 것이다.

유럽위원회는 1999년 7월과 9월 인터브루 사, Alken-Maes 사 및 벨기에 맥주업체연합에 대한 기습적 현장조사 이후 경쟁법 위반행위들을 알게 되었다고 밝혔다.

경쟁담당위원인 마리오 몬티는 동 위원회는 수년간 맥주업체와 판매점간의 배타적 거래협정에 초점을 맞춰왔지만, 맥주업체들간의 수평적 결합에 대해 조치를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였다. 그는 "시장공유 및 가격고정은 반경쟁적 행위의 가장 심각한 형태 중에 포함된다. 이러한 점에서 맥주 제조부문도 다른 부문과 똑같이 취급될 것이다" 라고 언급하였다.

■ 2000. 9. 28. Los Angeles Times

EMI사와 타임 워너사, 유럽위원회의 반대로 200억 달러 규모 합작 투자사업 계획 포기

EMI사와 타임 워너사는 10월 5일, 유럽위원회가 200억 달러(137억 파운드) 규모의 음악 관련 합작투자 사업을 저지할 것임이 확실해지자 자신들의 계획을 철회하였다.

유럽위원회 관리들은 이들 기업이 기업결합 인가를 얻기 위해 자신들의 사업부문의 상당부분을 매각하겠다는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기업결합을 저지한다는 내용의 결정 초안을 작성하였었다.

EMI사와 타임 워너사는 워너 뮤직 음반사업부문의 일부인 버진 레코드사와 Chappell Music Publishing사의 매각을 논의하여 왔었다. 그러나 관리들은 Chappell사의 매각만으로는 이들 두 기업의 결합이 가져올 음반출반시장에서의 지배력을 감소시키는 데 충분치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유럽위원회는 또한 당해 기업결합으로 인해 녹음음악시장을 지배하는 단지 네개의 주요 음반업체만이 남게 될 것이며, 이들은 자유로이 가격을 설정할 수 있게 될 것임을 우려하였었다.

동 위원회는 또한 AOL사와 타임 워너사간의 1,270억 달러 규모의 기업결합에 대하여, 이들 기업이 온라인 음악유통 부문에서 5년간 경쟁 인터

넷서비스 제공업체들을 차별하지 않기로 하는 양보안을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인가할 계획이다.

또한, EMI-타임 워너 합작투자사업에 대한 저지로 인해 유럽위원회가 AOL 사와 타임 워너 사간의 연계에 대하여 표명하였던 우려 중 다수가 제거된다.

관리들은 당해 결합으로 탄생하는 기업이 온라인 음악 유통시장을 지배하게 되고 기술적 표준을 설정하게 될 것임을 우려하였었다.

EU 경쟁담당위원인 마리오 몬티는 작년에 세 건의 기업결합계획을 저지하였으며, 그 외에 두 건의 기업결합계획도 저지될 것이 확실해지자 철회되었다.

EMI 사와 타임 워너 사는 새로운 기업결합계획을 작성하여 유럽위원회의 인가를 위해 이를 새로이 제출할 수도 있으나 이는 거의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기업들은 기업결합계획을 철회할 때에 내용을 새로 작성하여 재신고하겠다고 하여 왔으나 아직까지 그렇게 한 기업은 없었다.

타임 워너 사의 사장인 Richard Parsons는 두 기업들은 "자신들에게 이점이 되고 유럽위원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결합을 구성하기 위한 방법을 계속 강구할 것"이라고 하였다.

EMI 사의 회장인 Eric Nicolli는 EMI 사는 반트러스트 우려를 해결할 방법을 계속 찾을 것이라고 하였으나, 이것이 주주들의 이익을 해치면서까지 이루어지는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 2000. 10. 5, Financial Times

EU, AOL-타임 워너 기업결합 조건부 인가

유럽위원회는 10월 11일 아메리카 온라인 사와 타임 워너 사간의 1,270억 달러 규모의 기업결합에 대하여, 이들 기업이 경쟁업체들에 대하여 시장을 부당하게 봉쇄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이를 인가하였다.

이러한 조건에는 AOL 사가 여러 합작투자사업을 통해 관계를 맺고 있는 독일 언론 그룹인 베텔스만 사와의 연계를 단절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유럽위원회는 이 조치가 AOL 사로 하여금 인터넷을 통한 음악 유통이라는 신흥 시장에서 지배력을 갖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하였다.

동 위원회는 "제출된 서약내용들로 인해 AOL 사는 유럽의 주요 음반 출판권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될 것이며 이로써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음악 유통과 소프트웨어 형식의 음악 재생기에 관한 신흥시장에서 AOL 사가 지배력을 가질 위험이 사라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베텔스만 사는 AOL Europe 사, 그리고 AOL 사와 협력관계에 있는 Compuserve France 합작투자사업들에서 손을 뗄 것이다.

AOL-타임 워너 사는 또한 베텔스만 사의 음악이 배타적으로 AOL 사를 통해서만 다운로드되는 것을 방지할 것이며, 이러한 음악이 AOL 사의 소프트웨어에서만 연주되는 포맷으로 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이다.

이들 기업은 또한 다른 인터넷 콘텐츠 제공업체들을 차별하지 않도록 보장하게 되며, 5년간 AOL 사와 동일한 조건하에 음악을 온라인으로 경쟁업체들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또한 음악을 AOL 사와 관련된 인터넷 사이트에서만 전적으로 유통시키지는 않겠다고 제안하였다.

이들 결합된 기업이 온라인 음악 시장에서 지배력을 가질 가능성에 대한 유럽위원회의 우려는 지난 주에 영국 음악그룹인 EMI 사가 타임 워너 사와의 합작투자사업을 설립할 계획을 철회하면서 이미 제거되었다.

EU 경쟁담당 관리들은 EMI-타임 워너 사와 AOL-타임 워너 사간의 수직적 연계를 통해 새로운 기업이 디지털 다운로드의 기술적 표준을 정할 수 있게 될 것을 우려하였었다. EMI 사와 타임 워너 사는 유럽위원회가 당해 합작투자사업을 저지하기로 계획하였음이 명백해지자 자신들간의 합의를 취소하였다. AOL 사는 또한 미국의 콘텐츠 제공업체들에게 유럽에서 AOL 사와 배타적 콘텐츠 게재 계약을 맺도록 강요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유럽위원회는 10월 13일 Vivendi 사가 유니버설 뮤직과 Canal Plus를 보유하고 있는 씨그램 사를 인수하겠다는 유사한 계획도 인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40억 유로화(296억 달러) 규모의 당해 기업결합은 AOL-타임 워너 기업결합과 유사한 우려를 야기하였는데, 이들 기업은 휴대폰을 통해 음악을 온라인으로 유통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Vivendi 사는 자사의 넷

워크에의 접근을 경쟁업체들에게 열어 놓을 것이며 유니버설 사의 영화들을 Canal Plus 유료 TV 채널을 통해 방영하는 배타적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을 제안하였다. 유럽위원회는 당해 기업결합을 4개월간의 검토 끝에 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00. 10. 11, Financial Times

이탈리아

이탈리아 주파수 경매 조사 관련, 기업들 압수 수색 당해

이탈리아 경쟁당국이 10월 27일 밤 이탈리아 제3세대 이동전화 주파수 인가 경매와 관련하여 결과를 조작하기 위한 담합이 있었는지를 공식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발표함으로써 이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경쟁당국은 주파수 경매에 참가한 기업들의 로마, 밀라노 및 토리노 사무실에 대하여 20차레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 당국의 움직임은 이탈리아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경매수입이 상당히 낮아진 결과를 보인 지난 주말에 개시되었다.

이탈리아에서 "반트러스트당국"으로 알려져 있으며 널리 존경을 받는 기관인 경쟁당국은 주파수 인가 입찰에 참가한 6개 기업 중 일부가 당해 입찰을 조기에 종결짓기 위해 담합하

였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쟁당국의 고위 관리들은 이번 조사는 이탈리아 4위의 이동전화회사인 Blu 사가 이들간의 입찰만에 어떻게 경쟁에서 물러났는지를 알아내는 것이 목적이라고 시사하였다. 이번 조사에 관련이 있는 한 관리는 "우리는 이번 경매의 이상한 결과가 이번 경매를 초기 단계에서 종료시키기 위한 Blu 사와 몇몇 경쟁업체들간의 비공식적인 합의 때문에 야기되었는지를 알고자 한다"고 언급하였다.

Blu 사의 이탈리아 주주들은 - 고속도로 건설그룹인 Autostrade 사가 대표적임 - 경매중 동 기업의 행동은 합법적인 것이었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해 왔다. 이들은 Blu 사가 경매에서 초기에 포기한 것은 이동전화 회사에서의 British Telecommunications 사 지분의 규모를 둘러싸고 동 기업과 계속 의견의 불일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탈리아 정부는 이번 주에 Blu 사의 경매에서의 조기 탈락은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판단하고 당해 기업이 경매 시작 전에 예치하였던 4조 리라(17억 달러)를 몰수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개시하였다. Blu 사의 주주들은 10월 25일 정부의 이러한 조치를 방지하기 위한 대응조치를 취하였으며, Blu 사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줄곧 행동하였다고 다시 한번 주장하였다.

경쟁당국의 27일 발표는 이탈리아 정부가 제3세대 주파수 인가를 5개 경매 낙찰업체들 - Telecom Italia, Omnitel, Wind(이탈리아 전력그룹

인 Enel 사가 주도), Andala(중국의 Hutchison Whampoa 사가 주도) 및 Ipse(스페인의 Telefonica 사가 주도) - 에게 공식적으로 배분한 직후에 나왔다.

지난 달 재무장관인 Vincenzo Visco는 이번 경매로 인해 정부는 50조 리라의 수입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것도 "매우 신중한 추정치"라고 하였다. 실제로 이번 경매수입은 26조 7,500억 리라에 그쳤다. 일부 재무부의 고위관리들은 부족분으로 인해 정부는 이탈리아가 유럽 연합에 서약한 부채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민영화 계획을 촉진하도록 압력을 받게 되었다고 하였다.

반트러스트당국은 수년간 경쟁법 위반에 대한 거액의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반시장적인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여 명망을 얻었다.

동 당국의 조사는 이번 주 초, 이번 경매가 담합에 의해 무력화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조사를 발표한 로마 검찰청이 수사 관저와 Blu 사의 본부에서 문서들을 압수한 이후에 나온 것이다.

■ 2000. 10. 27, Financial Times

일본

공취위, 주류 부당염매 방지 지침 제정

내년 1월의 주류판매 규제완화 실

시에 맞추어 공정취인위원회는 9월 26일, 부당염매 등의 단속에 대하여 독점금지법 적용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였다. 또한 자민, 공명, 보수 등 여당 3당도 같은 날, 미성년자에 주류를 판매한 업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미성년자 음주금지법과 주세법 개정 원안을 정리하였으며, 이는 이번 임시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제안된다.

독점금지법 적용 가이드라인에서는 부당염매에 대하여 판매가격이 「실질적 매입가격을 현저히 하회하는가」를 기준으로 명시한다. 주말마다의 염매에 대하여서도 부당염매의 대상으로 규정할 생각임을 보이고 있다.

또한 주류업체가 동일지역에 있는 특약점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거래가격에 격차를 둔 경우에 독점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대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임을 명시하고 있다.

여당 3당의 개정 원안은 미성년자 음주금지법에 대하여 미성년자에 주류를 판매 또는 공여한 경우의 벌칙을 현행의 과료에서 「50만 엔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한다.

■ 2000. 9. 27. 오미우리신문

종합건설회사 60개사 담합의혹

공취취인위원회는 9월 27일 오전, 도쿄 다마(多摩)지구의 31개 시·정·촌의 공공공사를 둘러싸고 종합

건설회사 약 60개 사가 담합을 반복하여 왔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어, 이 중 「가시마(鹿島)」(본사 도쿄), 「오오바야시구미(大林組)」(본사 도쿄) 등 대형 종합건설회사를 포함하는 약 50개 사의 지점 및 영업소에 대하여 독점금지법 위반(부당한 거래제한) 혐의로 현장조사에 착수하였다.

공취위에서는 「다이세이(大成)건설」(본사 도쿄) 간부를 매개역으로 하여 과거 3년 동안에 1,000억 엔 가까운 공공공사에서 수주조정이 행하여졌다고 보고 있다. 대형 종합건설회사가 중심인 건설담합에서 공취위가 현장조사에 나선 것은 1991년의 사이타마(埼玉) 토요일의 입찰담합사건 이래 9년만이다. 종합건설업계에서 담합조직이 뿌리깊게 남아 있는 것이 표면화되어, 초점이 되어 있는 국가 공공사업개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현장조사를 받고 있는 업체는 가시마, 오오바야시구미 외에 「후지타」, 「마에다(前田)건설공업」(양사 모두 본사 도쿄), 「제니타카구미(銭高組)」, 「아사누마구미(浅沼組)」(양사 모두 본사 오사카시) 등 종합건설업체 약 50개 사이다.

또한 약 50개 사 이외에 「다이세이 건설」(본사 도쿄) 등 8개 사도 이 담합에 가담하였다는 의혹이 있다. 공취위는 금년 3월, 이들 8개 사에 대하여 마치다(町田)시가 본거지인 업체들이 중심이 된 시 발주공사를 둘러싼 담합 의혹과 관련하여 이미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공취위는 이 담합의혹을 조사하는

도중에 종합건설회사 간부들에 대한 청취 등을 통해 다마 전역에 걸친 종합건설회사의 담합조직의 존재를 파악하였다. 관계자에 따르면 종합건설회사 약 60개 사는 다마 지구의 27시 3정 1촌 및 도쿄의 6개 시가 출자한 재단법인 「도쿄신도시건설공사」에 각 시정촌이 위탁하여 발주하는 건축, 토목공사의 경쟁입찰을 대상으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낙찰가격을 결정하여 왔다는 의혹이 있다. 다마 지구에서는 종합건설회사 각 사의 친목단체인 「삼다마 건우회」가 사이타마 토요일의 담합사건의 적발을 계기로 하여 1992년 6월에 해산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다이세이 건설의 전 다마 영업소장이 담합의 매개역이 되어, 각 시간에 수주조정을 반복하여 왔다.

공취위에서는 과거 3년간의 공사를 중심으로 종합건설회사 담합의 실태를 조사하고 있는데, 주로 건축공사를 주제로 담합이 행하여져 왔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아키루노 시 신청사 건설공사(낙찰금액 약 36억 엔) 등에 수주조정의 의혹이 향해지고 있다.

공공공사에 사용되는 31개 시정촌의 보통건설사업비는 1998년도에 총액 약 2,076억 엔이며, 또한 이 중 도쿄 신도시 건설공사에 덧붙여 20개 시정이 발주를 위탁한 토지구획정리사업과 하수도사업은 합계 약 215억 엔을 상회하고 있다.

공공사업개혁을 둘러싸고는 간척사업과 댐 건설 등의 공공사업 비판이 높아진 점을 계기로, 여당 3당이 금년 8월, 233건의 사업을 원칙적으로 중지하도록 정부에 권고하였다. 이 중

담합 등의 부정행위에 대하여도 벌칙 강화를 도모하는 공공사업의 중장기적 개혁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정부는 공공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정보공시, 입찰감시를 행하는 제3자 기관의 설치 등의 공통규칙을 정한 「공공사하도급계약 적정화 법안」(가칭)을 이번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 2000. 9. 27, 요미우리신문

공취위, DSL 진입방해 혐의로 NTT 동일본 사 사정청취

기존의 전화회선을 이용하여 고속으로 인터넷 송수신이 가능한 디지털 가입자선(DSL) 사업을 둘러싸고 NTT 동일본 사(본사 도쿄)가 다른 접속업체의 신규진입을 방해하였다는 혐의가 있다고 하여 공정취인위원회는 10월 24일까지 독점금지법 위반(사적독점의 금지)의 혐의로 동 회사로부터 임의로 사정을 청취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미국정부가 “신규진입에 장애가 되고 있다” 등의 사태에 대한 개선을 일본정부에 요청하였었다.

DSL은 기존의 아날로그 전화회선(동선)의 발신측과 수신측에 「ADSL(비대칭 디지털 가입자선) 모뎀」과 「스플리터」 등으로 불리는 기기를 부착한 것으로, NTT 사의 ISDN(중합 디지털 통신망)에 비하여

약 10배의 고속 인터넷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다.

공취위에 따르면 NTT 동일본 사는 작년 7월의 재판 후 DSL 사업의 실시에 불가결한 가입자 전화망의 90% 이상의 점유율을 갖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 「도쿄 메탈릭 통신(본사 도쿄)」 등 수개 사의 DSL 사업에 대하여 신청 전에 수개월간의 사전조정기간을 두는 등으로 하여 신규진입을 늦추는 방해행위를 하여 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DSL 사업용으로 이용가능한 회선이 비어 있는가에 대하여 신속한 정보제공을 태만히 한 외에, DSL용 기기의 설치공사에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업체를 사용하도록 요구한 등의 의혹도 지적되고 있다.

신규가입업체 사이에서는 ‘NTT 사에 대하여 새로운 회선의 설치신청을 하였으나 일부밖에 인정되지 않았다’, ‘신청을 해서 NTT 사가 서비스 가능한가를 회답할 때까지 시간이 걸려, 사업에 지장이 있다’ 등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미국은 이번 달 중순, 일본정부에 대한 「연차요망서」를 통해 DSK 등의 서비스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우정성에 대하여 (1)지역 NTT 사의 건물내 공간의 여유상황에 관한 정보를 신속·완전하게 공개하고, (2)결정된 기간 내에 공사를 개시하며, (3)요금의 근거를 정당화할 것 등의 6개 항목의 개선을 NTT 사에 의무지울 것을 요청하였다.

NTT 동일본 사는 작년 12월부터 도쿄의 일부지역에 한정하여 DSL의 시험서비스를 실시하고, 올해 12월경

부터 본격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하고 있다.

공취위의 사정청취에 대하여 NTT 동일본 사 홍보실은 “내용에 관해서는 논평할 입장이 아니지만, DSL 서비스에 대하여서는 우정성 연구회의 모든 답신에 좇아 또는 이를 선취하는 형태로 신규진입업체에 대응하여 오고 있으며, 의도적으로 지연하는 등의 사실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언급하였다.

■ 2000. 10. 24, 아사히신문